

자격시험 등의 수수료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수수료
1.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가. 국가유산수리기술자(필기시험) 나. 국가유산수리기술자(면접시험) 다. 국가유산수리기능자[소목수, 화공, 드잡이공(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 람), 제작와공, 목조각공, 조경공, 훈증공, 실측설계사보]	3만원 2만원 2만원
라. 국가유산수리기능자(대목수, 가공석공, 철물공, 석조각 공, 세척공, 보존처리공, 모사공)	3만원
마. 국가유산수리기능자[쌓기석공, 번와(翻瓦)와공, 한식미 장공, 칠공, 도금공, 표구공, 식물보호공, 박제 및 표본제작 공, 온돌공]	5만원
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 급	5천원
3.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	5천원
4.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 급	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5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	5만원
가. 종합국가유산수리업	3만원
나. 전문국가유산수리업	3만원
다. 국가유산실측설계업	3만원
라. 국가유산감리업	3만원
6.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	5천원. 다만, 국가유산수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다.
7.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	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8.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	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